

## 5-1. 유증

▶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했을 때

1순위상속자(배우자 및 직계비속)에게 유증이 되면 상속으로 보고 6개월이내 신고하고 2.8%적용  
1순위상속자 이외의 자에게 유증이 되면 **증여로 보아 3.5% 적용하고** 유증개시일(피상속인 사망일)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해야하야함.-조심2015지1855 포괄유증은 상속으로 봄  
**유언공정증서**가 상속분할협의서나 증여계약서를 대신한다.

※ **유언대용신탁**(신탁법59조)의 경우도 상속으로 봄.

필요서류 : 신탁재산귀속증서, 신탁원부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 
유류분반환청구소송 [유류분: 법률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]